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9
----------	-----

2023. 7. 13.(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성대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7월 13일

-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성대 의원)

가. 제안사유

○ 도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 도 차원의 육성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야영대회 개최, 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야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야영장 정보제공, 사무의 위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9조)
-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제정 필요성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활동 증가 및 삶에 대한 가치기준의 변화로 해외여행과 더불어 야영 및 캠핑, 오토캠핑, 차박 등의 형태의 야외활동이 활성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단위 여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야영장 및 캠핑장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
- 전국의 주요 야영장 및 캠핑장은 방문객들의 평가에 따라 다양한 홍보 효과로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충청북도내 등록된 야영(캠핑)장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도내 야영(캠핑)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근거 마련으로 해당 조례 필요함.
- 도내 등록된 야영장은 총 247개소로 일반야영장업이 203개소, 자동차야영업장이 44개소이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제천시가 전체 야영(캠핑)장 중 30.8%인 76개소, 충주시가 15.8%인 39개소, 괴산군이 15.4%인 3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 3개 시·군이 62.0%를 차지하고 있음(표-1참조).

[표-1] 충청북도 야영(캠핑)장 등록 현황

(2023.06.30.기준)

지자체	합계	비율(%)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영동군	12	4.9	11	1
옥천군	5	2.0	4	1
괴산군	38	15.4	37	1
진천군	10	4.0	7	3
음성군	5	2.0	3	2
증평군	1	0.4	0	1
단양군	29	11.7	19	10
충주시	39	15.8	27	12
제천시	76	30.8	68	8
청주시	17	6.9	14	3
보은군	15	6.1	13	2
합계	247	100.0	203	44

○ 각 시·군에 소재하는 야영(캠핑)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례가 괴산군,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이외에는 없어(표-2 참조) 야영(캠핑)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내 등록된 247개소의 야영(캠핑)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야영(캠핑)장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야영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인 역할을 위해 통합조례가 필요함.

[표-2] 충북 기초자치단체 야영(캠핑)장 조례 제정 현황

(2023.06.30.기준)

지자체	구분	조례명	제정일
영동군		×	
옥천군		×	
괴산군	육성·지원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09.
	운영·관리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19.06.28.
진천군		×	
음성군		×	
증평군		×	
단양군		×	
충주시	운영·관리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22.05.06.
제천시	운영·관리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2015.08.13.
청주시	운영·관리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2018.02.23.
보은군		×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야영(캠핑)장이 많이 개설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도내 야영(캠핑)장을 육성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표-3 참조).

[표-3] 광역자치단체 야영(캠핑)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3.06.30.기준)

연번	지자체	조례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13.
2	전라남도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6.29.
3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3.12.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30.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10.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야영(캠핑)장 육성 및 지원이 아닌 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운영에 중점을 둔 조례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 기여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함.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야영(캠핑)”, “야영객”, “야영장”, “야영장업”의 용어를 정의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과 안전대책, 교육, 홍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제공 노력과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5년마다 수립하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의 근거와 내용을 규정하고, 해당 계획수립 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야영(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야영대회를 개최와 예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캠핑)대회 유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도내 등록된 야영장을 평가, 평가위원 위촉,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한 우수야영장 지정과 지원 및 자격 미달 야영장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야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도내 야영장에 대한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하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야영장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는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7조(야영 교육),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매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에서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 도 차원의 육성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됨.
- 또한 도내 야영장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우수야영장 지정을 통한 질적 제고로 도내 야외활동(야영, 캠핑, 카라반 등)관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6조 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제10조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형식에 그친 조례의 적용과 운영이 아닌 도내 우수한 야영(캠핑)장의 육성을 위해 형평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면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및 발전 전략

3. 야영(캠핑)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야영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야영(캠핑)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캠핑)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

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야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전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실시) 도지사는 매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 나. (생략)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하 생략)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 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 나. (생략)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